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-56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에 대한 제한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2017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의 재산세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85%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
(안 제19조의2)
- 나.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(부칙 안 제3조)
 - 종전 2017.12.31. ⇒ 변경 2019.12.31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7. 4. 27. ~ 5. 17.(제출의견 없음)
- 나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다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: 원안 동의
- 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 5. 23.)
- 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사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, 끝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1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다만 제2조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38조제4항의 적용시한을 따른다.

제4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9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